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42

발의연월일: 2020. 12. 18.

발 의 자:윤재옥ㆍ류성걸ㆍ김상훈

정진석・김승수・윤두현

이종배・추경호・양금희

윤창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재해부 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등은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

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보상대상자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에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및 제5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외의 의료기관에 제51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
	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51조제5항에 따
	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
	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u>부담한다.</u>
<u><신 설></u>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① 국
	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
	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